

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

■ 제안사유

- 현재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의 세목, 과세 객체, 과세표준, 세율등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·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,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목적 조항 신설(안 제1조)
-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항 개정(안 제12조)
 - 3개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
-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조항 삭제
-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삭제
- 구판사업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비율 조정(안 제29조 및 제39조)
 -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
-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3조)
 - 공람 :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람하여야 한다.
 - 이의신청 :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등 세부 규정을 신설함.

■ 관련근거

-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지침 : 세정 13415-1372 ('97.12.11)

■ 검토의견

-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전체적 개정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등 전면적인 개정에 의한 것으로
-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장의 제정과 교부, 수정신고제도,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, 기한연장 조항을 신설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판단되며
- 구세인 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, 세율, 세액조정, 열람 및 이의신청 규정을 체계적,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이며,
- 해당부서에서는 신설 변경된 세법을 전직원이 숙지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의 권익과 공평과세 차원에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첨부 : 주요개정내용

주요 개정 내용

- 제1조 목적 (신설)

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.

- 제6조 납세자의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(신설)

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
(지방세법 제65조)

- 제7조 수정신고 (신설)

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
세액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을 경우에 선의의 납세자가 불이익을
받지 않도록 하고자 신설

(지방세법 제71조)

-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(신설)

과세예고통지,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
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에 구세 부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
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신설

(지방세법 제70조)

- 제12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(개정)

기한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연장 납
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(지방세법 제26조의2)

- 제18조 납세의무자등 (신설)

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자는 매년 면허세를
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종류와 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 적용

(지방세법 제160, 161조)

- 제19조 세율 (신설)

면허세율(제1종~제5종) 규정(지방세법 제164조)

- 제22조 과세대상등 (신설)

재산세의 과세객체(건축물, 선박 및 항공기)를 명시
(지방세법 제181조)

- 제23조 납세의무자 (신설)

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 (지방세법 제182조)

- 제26조 세율 (신설)

재산세 부과시 건축물의 세율을 1000분의3에서 부터 1000분의70
까지로 규정 (지방세법 제188조)

- 제2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(조문정리)

법의 범위안에서 현행 구판사업등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75에서
100분의50으로 조정 (지방세법 제266조 3항)

- 제34조 과세대상 (신설)

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모든 토지로 명시
(지방세법 제234조의8)

- 제35조 납세의무자 (신설)

과세대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 부과
(지방세법 제234조의9)

- 제36조 과세표준 (신설)

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종합합산, 별도합산,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
규정 (지방세법 제234조의15)

- 제37조 세율 (신설)

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초과 누진세율 적용
(지방세법 제234조의 16)

- 제3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(신설)

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현행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 (지방세법 제266조3항)

- 제40조 부과징수등 (신설)

종합토지세 세액 안분방법, 부과절차등 규정
(지방세법 제234조의18)

- 제41조 세액조정 (신설)

종합토지세의 세액 조정사유 발생시 법의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
내무부장관의 세액조정자료에 의하여 조정 신설
(지방세법 제234조의19)

- 제42조 신고의무 (신설)

토지의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착오과세등 불이익
처분 사전 예방
(지방세법 제234조의 21)

- 제43조 공람 및 이의신청 (신설)

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(6.1)로부터
15일간 공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착오과세등 사전해소
(지방세법 제234조의22)

- 제44조 매각·등기·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(신설)

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
또는 사본청구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 명시
(지방세법 제234조의23)

- 제46조 납세의무자 (신설)

사업소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(매년 7.1) 현재 구내에 사업소
를 둔 자로 규정 (지방세법 제244조)

- 제47조 과세표준 (신설)

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사업소의 연면적 또는 월급여의 총액으로
규정 (지방세법 제247조)

- 제48조 세율 (자구수정 및 신설)

사업소의 세율은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, 종업
원할은 급여총액의 100분의 0.5로 정하고 오염배출업소는 2배 중
과함으로써 환경문제 해소에도 기여 (지방세법 제248조)

- 제5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(자구신설)

지방세 감면관리제도의 일종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
의무적으로 감면내역을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
신청서의 제출기한 신설